공개토론회 자료

본 자료는 2008. 6.25(수)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~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

- 민간투자 분야 -

- 2008년 6월 24일(화) 17:00~19:00
- 한국개발연구원 (별관 2층 대회의실)

국 가 재 정 운 용 계 획
민간투자 분야 작업반

동 자료는 '08~'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프 로 그 램

16:30～17:00 **등록 및 네트워킹**

17:00～19:00 **민간투자분야 :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방안**

사 회 : 손의영 (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)

발 표 : 박 현 (KDI 민간투자지원실장)

14:00～16:00

토 론 : 김용환 (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)

이재홍 (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)

박철희 (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지원과장)

신성환 (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)

조남건 (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연구위원)

박시룡 (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)

정창수 (SOC포럼 회장)

목 차

토론주제 :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

1. 문제의 제기 ····· 1

2. 현황과 문제점 ····· 3

가.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요기간 ····· 3
나. 민간제안사업 위주의 BTO 사업 추진 ····· 4
다. BTL 대상사업 지정 절차 ····· 6
라. 사후관리 체계 ····· 7

3. 개선방안 ····· 10

가. BTO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개선 ····· 10
나. BTL 대상사업 지정절차 개선 ····· 15
다. 사후관리 강화 ····· 17

<참고자료 1>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····· 19
<참고자료 2>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Checklist ····· 22

토론주제

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

1. 문제의 제기

□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SOC 부문 재정투자의 16.3%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

○ 1994년 민간투자법이 도입된 이후, 1999년(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도입)과 2005년(BTL 방식 도입) 법령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

〈표 1〉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

(단위: 조원, %)

	'98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
· 민간투자(A)[1]	0.5	1.0	0.6	1.2	1.2	1.7	2.6	3.0	3.0
· SOC재정투자(B)[2]	12.7	15.2	16.0	16.0	18.4	17.4	18.3	18.4	18.4
· A/B(%)	3.9	6.6	3.4	7.5	6.6	9.8	14.2	16.3	16.3

주: 1) 연도별 집행기준

2) "수송·교통 및 지역개발"분야 기준, 「국가재정운용계획」

* 참고 : 「2007~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, 민간투자분야」 공개토론회 자료, 2007. 3. 20.

□ '07년 12월말 현재 총 458건, 76.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.

〈표 2〉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('07. 12말 현재)

(단위 : 건(조원))

방식 / 단계	BTO		BTL	합계
	국가관리사업*	자체관리사업		
운영	19 (9.6)	66 (3.1)	33	118
시공	32 (27.5)	17 (1.2)	101	150
시공 준비	10 (4.6)	7 (0.2)	42	59
협상	16 (12.7)	1 (0.05)	112	129
고시	2 (0.9)	-	-	2
소계	79 (55.3)	91 (4.6)	288	458
합계	170 (59.9)		(16.5)	(76.4)

* 총사업비 2,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업

□ 민간투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 공급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효율적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.

○ ‘효율성’을 중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추진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간의 요구가 존재

○ 반면,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납세자의 돈의 가치 (VfM: Value for Money)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관리 당위성 존재

○ VfM을 확보하면서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민간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

□ 한편, 운영 단계에 진입한 사업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후적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.

○ 지금까지의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사업 선정, 사업자 지정, 협약 체결 등 사업의 사전적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 왔음.

○ 민간투자사업의 장기계약 특성상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협약변경 등 사업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높아짐.

□ 본 자료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

○ 그 동안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요기간을 분석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

○ 사업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

○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

2. 현황과 문제점

가. 민간투자사업 추진 소요기간

□ BTO 사업의 추진 소요기간

○ BTO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.

- <참고자료 1> [그림 A-1] 및 [그림 A-2] 참조

- 타당성조사 → 대상사업 지정 → 협상대상자 지정 →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→ 실시계획 승인 → 시공 → 운영 (유지관리)

○ 부문간 비교를 위하여 자료구득이 가능한 도로 부문 사업의 추진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산정

□ 분석 결과

○ 도로 부문 정부고시사업은 타당성조사~착공까지 54개월이 소요되어, 도로부문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~착공까지의 평균 소요기간보다 짧은 수준으로 분석됨.

- 타당성분석(타당성조사, 적격성조사, 기본설계) 및 협상(지자체와 노선협의, 공사비 조정 등) 등에 장기간 소요

○ 도로 부문 민간제안사업은 적격성조사~착공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되어 정부고시사업 소요기간의 2/3 수준으로 분석됨.

○ 정부고시사업 협상 단계의 평균 소요기간은 18개월로서 장기간이 소요되어 협상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

- 도로 부문 민간제안사업 협상 단계의 평균소요기간은 17개월로 적격성조사(민간제안검토)~착공까지 소요기간(36개월)의 약 1/2을 차지

나. 민간제안사업 위주의 BTO 사업 추진

□ BTO 정부고시사업 추진 건수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민간제안사업 비중이 증가

○ '06년 이후 정부고시사업 추진 사례(고시기준) 없음.

〈표 3〉 연도별 BTO 민간투자사업 고시 현황

	'94	'95	'96	'97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합계
고시사업	4	7	9	6	7	18	11	10	7	8	3	4	-	-	94
제안사업	-	-	-	-	2	-	11	15	5	10	10	6	8	9	76
합계	4	7	9	6	9	18	22	25	12	18	13	10	8	9	170

□ 민간제안사업 활성화의 원인

○ 민간투자법이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권장

- 최초 제안자에게 입찰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제안의 인센티브를 제공

○ 주무관청 입장에서 제안사업의 사업지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

-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/기본계획 수준의 설계도서를 민간의 비용으로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,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

- 정부고시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,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약 2년 동안 타당성분석(타당성조사, 적격성조사, 기본설계 포함)을 수행하여야 함.

○ 민간제안사업은 사업을 선점할 유인을 가진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이 용이한 주무관청의 상호 이해가 일치

□ 제안사업 위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문제점

○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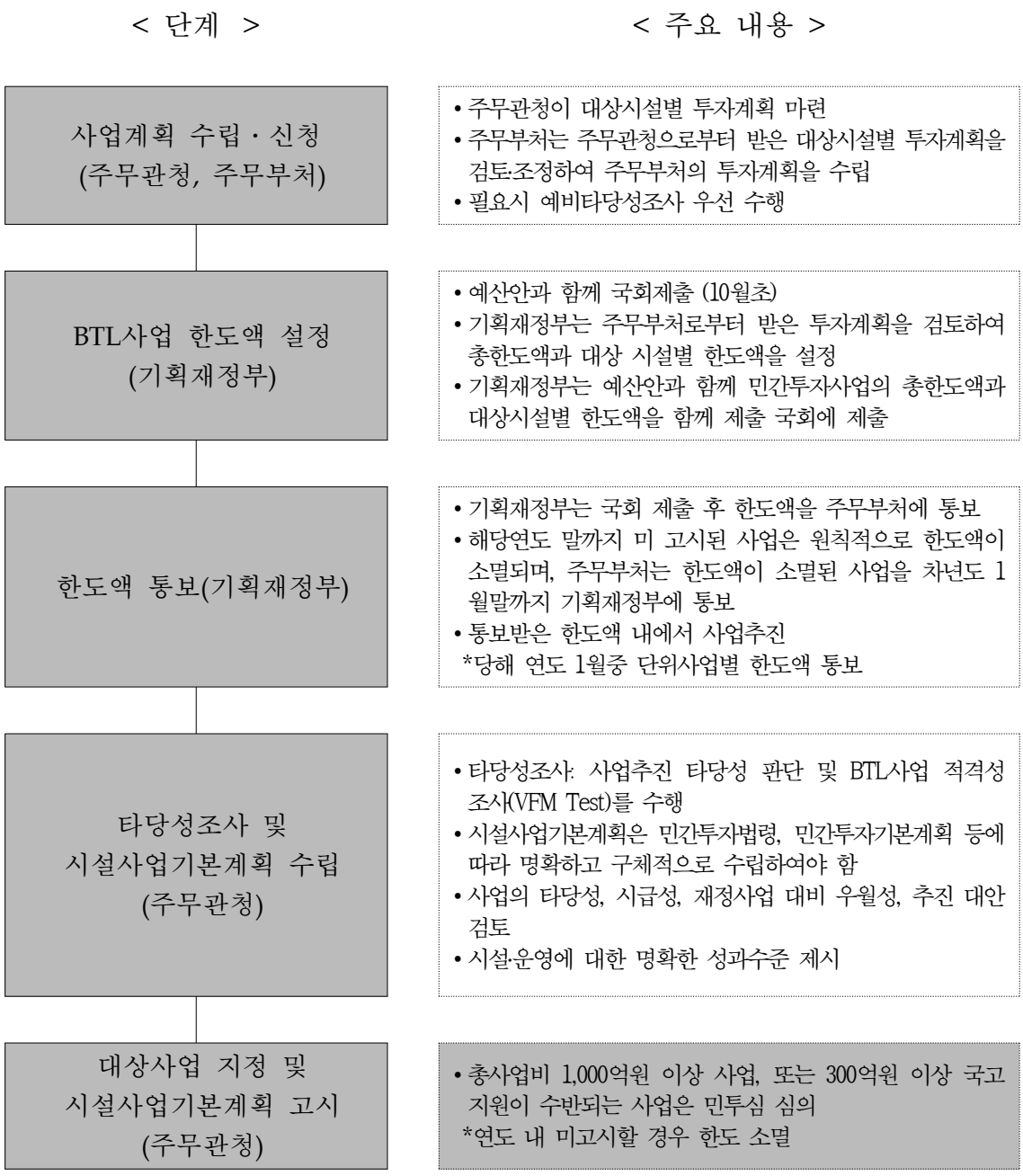
-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전제로 하는 제안사업은 관련 계획에 미반영 되었을 개연성

- 주무관청이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및 투자우선순위 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는 사례 발생

○ 다른 한편, 민간제안사업의 취지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보다는 이미 계획된 사업이 제안되어 민간제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발견

다. BTL 대상사업 지정 절차

[그림 1] BTL 대상사업 지정 절차 및 주요 내용



자료: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,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-35, 2008. 5.에서 수정

□ BTL 대상사업 지정절차 및 내용의 문제점

○ 현재의 BTL 사업 지정절차는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주안점

- 정부가 의도하는 준거기준(성과품질), 성과요구수준서, PSC 산정 작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도액을 설정

- 사업선정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정보를 활용하지 못함

○ 한도액 결정 이후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타당성조사가 미흡한 사례 발생

- 사업의 타당성, 민자 적격성, 상위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,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 미흡

○ 사업추진의 불안정성

- 타당성조사가 당해 연도 한도액 통보이후에 실시됨으로써 사업 일정 지연 초래

- 연말에 고시가 집중되어 미고시 사례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저해

- 연도 내 미고시할 경우 한도 소멸

라. 사후관리 체계

□ 사후관리 현황

○ 민간투자사업의 사후관리란 실시협약체결 이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의 만료시점까지 수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관리를 의미

○ 개별 주무관청이 사업별로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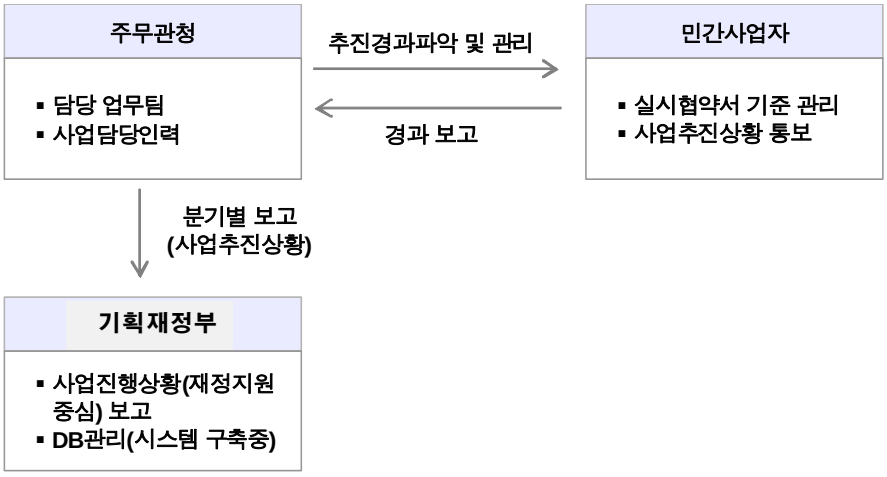
- 사업마다 SPC를 구성하여 재정사업 및 타 민간투자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

- 주무관청은 분기별로 통보양식에 맞춰 진행상황을 파악하고, 실시협약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점검

○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의 진행현황을 보고 받음.

○ 협약체결 단계까지는 주무관청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

[그림 2] 민간투자사업 관리 체계



□ 협약체결 이후 체계적인 관리 미흡

○ 기획재정부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 받음.

- 주무관청이 사업을 책임 관리하고 분기별로 공사·운영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체계

- 실시계획 승인, 실시협약 변경, 사용료 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음

- 정부 측에 불리하지 않은 사업조건 변경, 사용료 조정(물가상승률 반영)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주무관청 자체적으로 실시협약 변경 가능

○ 주무부처도 주무관청별로 분산 관리되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

- 운영이 시작되면 주무부처에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액 지급 등 재정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사업관리에 관여

- 유지관리 및 일관성 있는 관리시스템 미비: 재정 사업 및 기존 사업의 사용료 징수시스템, 중복투자, 교통정보, 수집의 비효율성, 재난관리 시 상호 협력체계 미흡 등 문제점 발생

○ 협약 변경 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

- 최초협약과 달리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업은(변경협약, 출자자 변경, 사업규모변경 등)은 65건 (조사대상의 약 55.5%)[1)]

- 주무관청별로 협약 변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.

-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

1) 2007년 12월 기준 협약완료사업 중 자료구득이 가능한 117개 사업의 협약변경 현황 조사 잠정분석 결과로서,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, 「민간투자사업 사후적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」, 2008(예정)의 조사 내용을 인용

3. 개선 방안

가. BTO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개선

1)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

□ 정부고시사업 활성화의 필요성

○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은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

○ 민간의 무분별한 사업제안을 사전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

□ 정부고시사업의 적극적 발굴

○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간투자 추진 적합성 검토 의무화

-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민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중

○ 부문별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수립 시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,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사전적으로 구분하도록 함.

- 주무부처가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지원

□ 민간제안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제안사업만을 추진

○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접수

○ 제안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을 강화

- 민간제안사업 접수 시 주무관청이 기존의 투자우선순위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

○ 민간제안사업 부합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

2) 협상 소요기간 단축

□ 사업고시 단계에서 사업내용을 구체화

○ 시설사업기본계획/제3자제안 공고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계 및 운영계획 등 요구수준을 사전에 결정

○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(안)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첨부

- PIMAC은 BTO 사업 부문별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표준(안)을 마련

□ 입찰평가 단계의 경쟁 정도에 따라 협상 절차를 차별화

○ 실질 경쟁이 이루어진 사업의 협상기간을 단축

-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첨부한 실시협약(안)을 중심으로 협상

-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(설계 VE) 절차를 간소화

○ 경쟁 활성화 방안 마련

- 일부 사업 부문 재정지원 상한기준 완화

 * (예시) 개발분담금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상한(40%)의 완화

- 부대·부속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

□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(설계 VE) 수행 방법의 개선

○ 협상 중에 수행되는 설계 VE 소요기간은 3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현실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

-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, 민원, 주무관청의 사업계획변경 요청(노선변경 등) 등이 설계 VE 지연의 주요 원인

○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확정

3)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검토 기준 구체화

□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Checklist를 제공

○ 개별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 기준

○ 주무관청의 검토 지연 또는 미흡한 검토 문제를 완화

- 민간제안서 검토기간(30일 이내) 초과 및 검토 생략 사례 예방

※ 현행 민간투자법 및 기본계획의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기준 종합

① 법적 적합성 (민간투자법 상의 대상시설)

②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

③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한 재정부담 감소 (VF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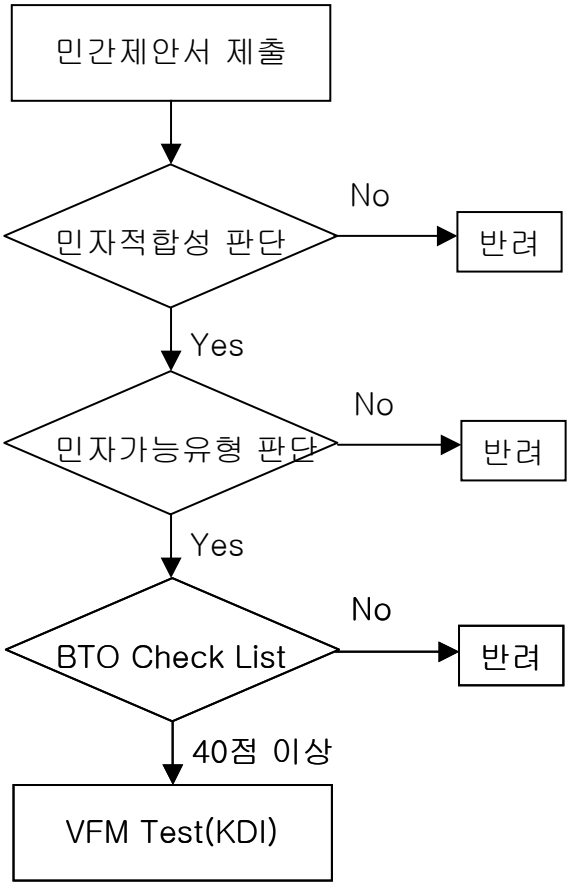
④ 조기완공의 필요성 (BTL/ 재정운용의 신축성)

⑤ 수익성 확보 (BTO, FIRR)

⑥ 국가 경제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 (경제적 타당성, B/C 또는 AHP)

□ 민간제안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Checklist (<참고자료 2>)[2)]

[그림 3] 민간제안사업 적합성 판단 흐름도



□ Checklist 활용 방안

○ 활용 주체: 주무관청 (및 민자 관련 제도 담당자)

○ 적용 단위: 개별사업

○ 활용 단계: 주무관청이 PIMAC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정책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

2) 한국개발연구원, 「민자사업의 국가정책 부합여부 및 우선순위 판단기준 연구」, (2008 예정)에서 제시한 초안으로서 시험 적용을 통하여 Checklist를 보완할 계획임.

○ 민자사업 적합성 판단 기준

- Checklist의 합산 점수(Checklist score)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

○ Checklist 이후 단계 조치: PIMAC에 적격성조사를 의뢰

4) 적격성 조사/제안서 검토 기간 단축 검토

□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적격성조사(제안서검토) 기간의 차등화

○ 도로, 철도, 항만, 관광 부문 사업: 현행 조사기간 (6개월 이내)의 적정성 재검토

- 사업의 수요 분석 오차 및 핵심 시나리오 분석에 중점을 두고 추진

○ 환경, 주차장 및 기타 부문 사업: 분석 내용이 정형화된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 단축을 검토

□ 법정 필수시설 및 소규모 사업(예,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)은 개략분석으로 검토 기간을 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

○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 설정의 취지를 원용

○ 개략분석의 내용

- 경제성 분석 생략

- PIMAC은 개략분석 지침을 마련

나. BTL 대상사업 지정절차 개선

□ 타당성조사의 조기 실시

○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후,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익년도 BTL 사업으로 신청

○ 기획재정부의 한도액 통보 직후 시설사업기본계획 착수

[그림 4] BTL 대상사업 지정절차의 변화



□ 제도개선 효과

○ 사업내용을 조기에 구체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사업 추진의 예측성을 제고

- 국회 한도액 보고 및 부처 한도액 통보의 구체성

○ 타당성조사 조기 수행으로 연말 사업고시 집중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 해소

□ 적용시점 및 필요 조치 사항

○ 제도개선은 예산편성의 주기와 제도개선에 따른 업무의 집중 방지를 위하여 적용시기를 검토

○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

[그림 5] BTL 대상사업 지정절차 예시 (2009년)



다. 사후관리 강화

□ 제도개선 방향

○ 협약체결 이후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강화

○ 민간투자사업 보고내용 및 관련절차를 보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

- 실시협약 변경대상 및 협의절차 명시화

- 출자자 변경에 대한 기준 명시화, 운영·재무결과 보고 등

○ 민간투자사업 DB 관리를 통한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

□ 사업진행 현황 보고 및 협의 체계의 강화

○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보고 및 협의규정 명확화(시행령, 기본계획에 반영)

- 실시계획 승인, 실시협약 변경, 출자자 변경, 사용료 조정, 연도별 재무결과 등

○ 국가관리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변경시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에 보고

○ 분기별 보고서 취합 이외에 현장점검을 실시

□ 운영 단계 사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 수행

○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

- 사업시행자, 주무관청, 사용자, 외부전문가로 구성

- BTL 사업에서 수행하는 서비스 평가를 BTO 사업에도 적용

○ 평가항목 : 유용성, 안전성, 내구성, 서비스 만족도 등

○ 주무관청은 평가 결과를 민자사업 집행점검 TF에 보고

- 조사결과를 기본계획 개정, 각종 요령개정에 활용하여 신규추진 사업부터 문제점을 해소

□ 온라인 DB시스템(InfraInfo)을 통한 사후관리

○ 개별 주무관청이 사업 진행 단계별 상세 내용을 온라인 DB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와 PIMAC이 관리

- 주무관청은 사업추진 상황을 온라인 DB에 입력 (기본계획 개정, 2008. 5.)

○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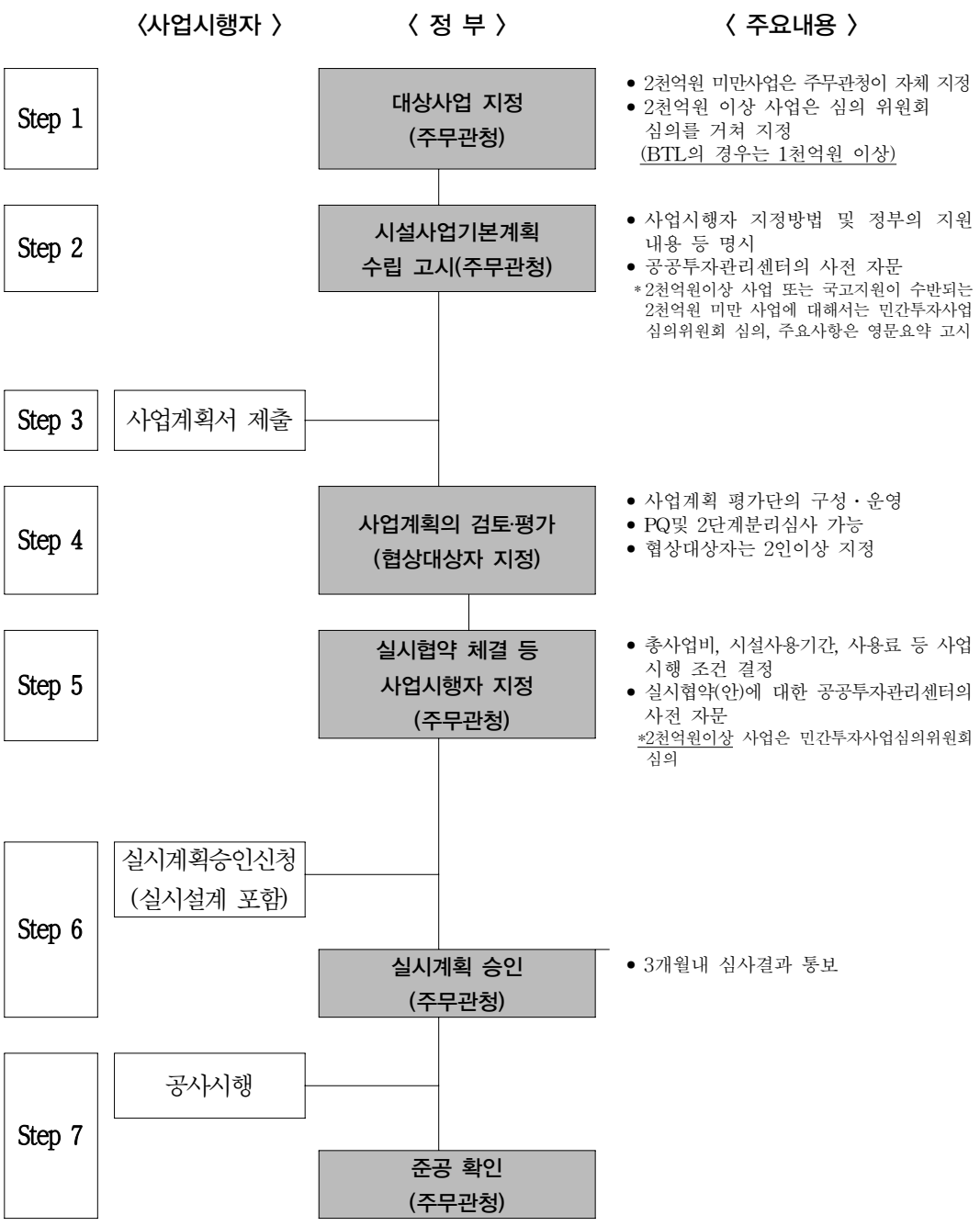
- 사업 추진 현황 및 변경 내용을 일괄적으로 파악

- 민간투자사업 총량 변수 집계가 용이

-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연계하여 재정사업과 일관성을 갖고 민간투자사업을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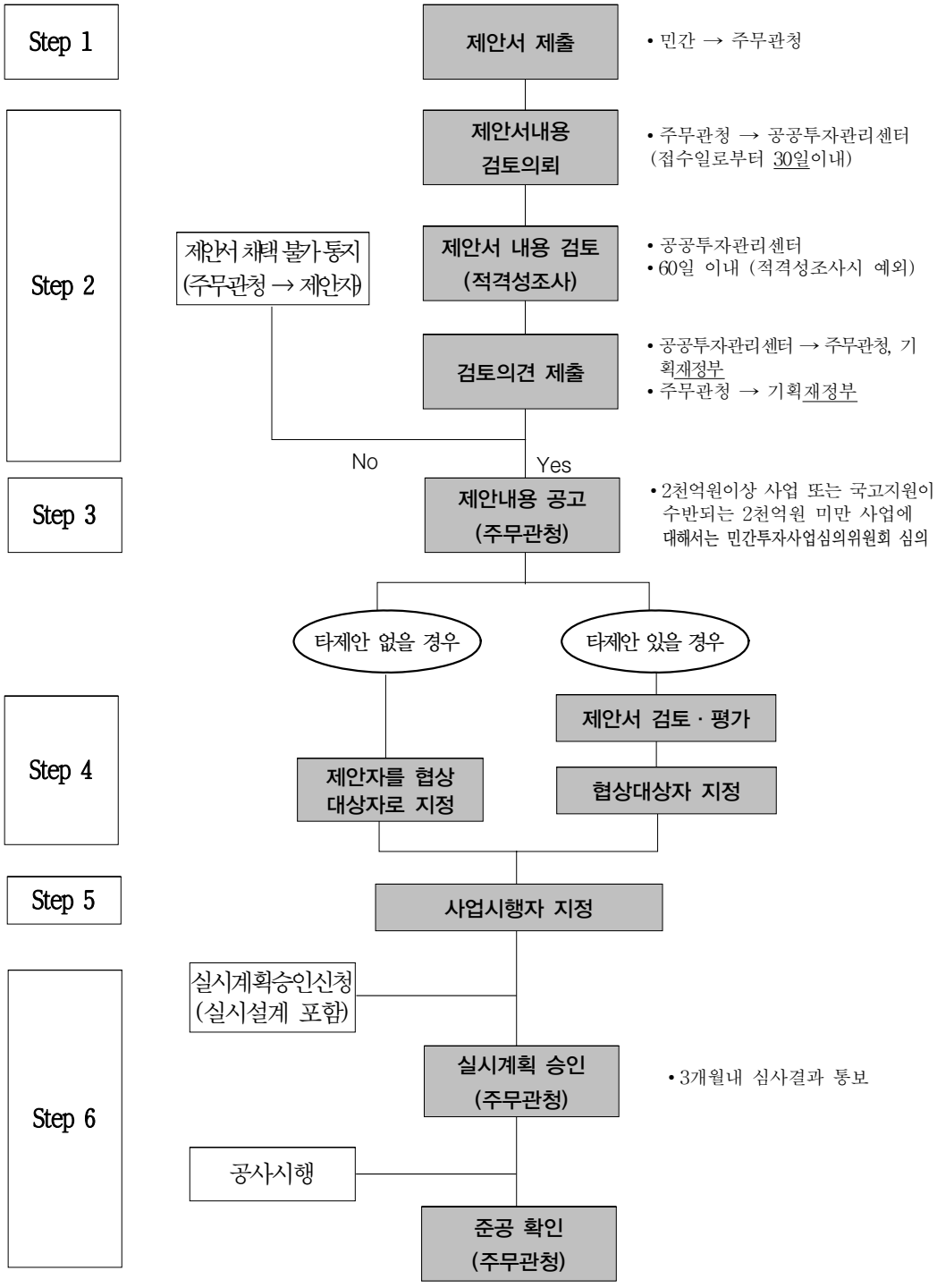
<참고자료 1>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

[그림 A-1] BTO 정부고시사업의 추진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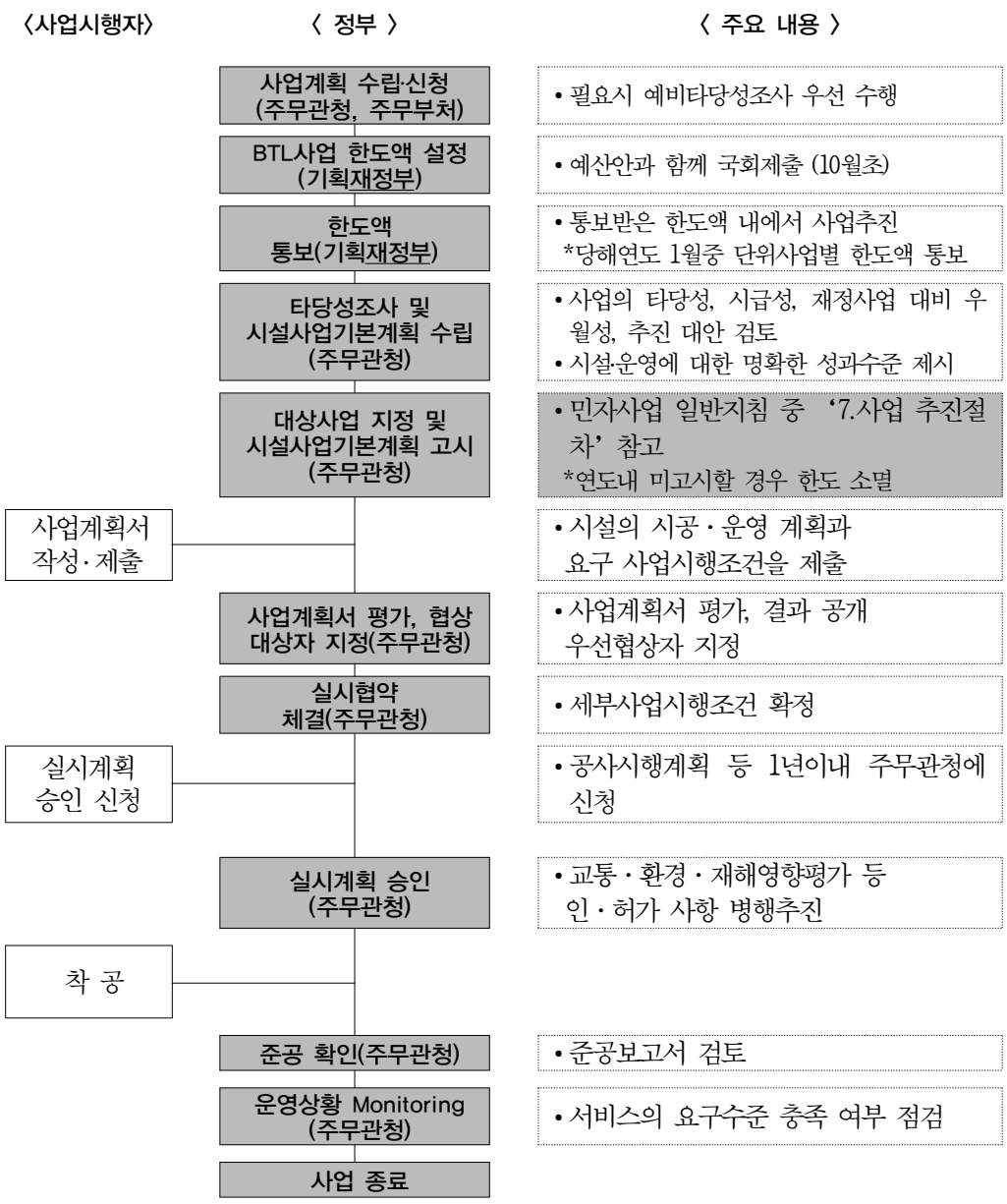
자료: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,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-35, 2008. 5.

[그림 A-2] BTO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



자료: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,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-35, 2008.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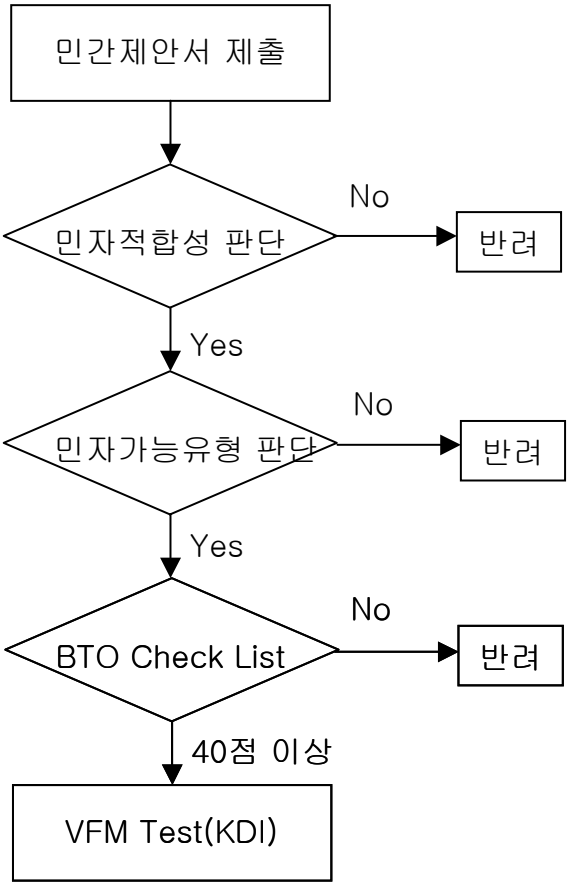
[그림 A-3] BTL 사업의 추진 절차



자료: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,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-35, 2008. 5.

<참고자료 2> 민간투자사업 적합성 판단을 위한 Checklist

가. 흐름도



<민자가능유형 판단 : BTO vs BTL 유형>

유형	Ⅰ	Ⅱ	Ⅲ	Ⅳ	Ⅴ	Ⅵ
1. core service	O	O	O	△	X	X
2. user fee	O	O	X	O	O	X
3. 수익성	O	X/△	X	O	X	X
사례	고속도로, 경전철(수도권)	환경 처리시설	국도 하수관거	로봇랜드 등	박물관, 과학관	학교
민자가능유형	BTO	BTL/BTO	BTL	BTL/BTO	BTL	BTL

나. 민자적합성 판단

평 가 항 목	설문항목		체크 (∨)	
민자 적합성	1	민투법 제2조에 포함된 민간투자 대상시설인가?	Yes	No
	2	SOC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, 정책 방향, 국가 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하는가?	Yes	No

※ 모든 문항에 'Yes'일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

다. 민자가능유형 판단

평 가 항 목	설문항목		체크 (∨)	
민자 가능 유형 판단	1	시설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민간의 책임 하에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가?	Yes	No
	2	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?	Yes	No
	3	시설물 이용료(toll/user fee)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다른 대안의 선택이 가능한가?	Yes	No

※ 모든 문항에 'Yes'일 경우 BTO 유형 사업군에 해당

라. 체크리스트 (BTO)

평 가 항 목	설문항목		체크 (∨)				
경제성 원칙	1	본 사업의 총사업비가 Value for Money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규모인가? -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 -50% <사업규모 : 1점 -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 -50% <사업규모<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 -10% : 2점 -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-10% <사업규모<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+10% : 3점 -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 +10% <사업규모<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 +50% : 4점 - 해당 분야 재정사업 평균 +50% <사업규모 : 5점	①	②	③	④	⑤
	2	사업의 재무적 수익성이 충분한가? - 정부 보조금이 '0'인 경우에도 사회적 수익률 5.5% 이상의 재무적 수익 발생: 5점 - 총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해당 분야 민간투자사업 평균에서 10% 수준: 3점 - 총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:1점	①	②	③	④	⑤
사업 편익 원칙	3	기존의 시설물(사업)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없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가? - 실질적, 회계적으로 독립 관리 가능한 경우 4점 이상 부여 - 기존 시설물과 별개 운영 및 회계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 2점 이하	①	②	③	④	⑤
	4	사업시행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할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가? - 제약 요인이 없는 경우 : 5 점	①	②	③	④	⑤
	5	본 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정의되고 의견 및 정보 교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? -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, 소재 및 연락처는 확인이 되는 지 등 - 민원발생 가능성 및 예상 사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고려 - 대표성있는 단체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- 이해당사자가 정부와 민간사업자만 있는 경우: 5점 (계약 내용 결정자)	①	②	③	④	⑤

효율성 원칙	6	사업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서비스 요구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? - 유사사업이 존재하고 활용 가능한 경우 4점 이상 -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 3점 이하 - 사업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충실한 경우: 4점 이상	①	②	③	④	⑤
	7	사업내용 상 민간기업의 사업 입찰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충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가? - 재무성, 시장특성, 지역 건설시장 및 운영전문기관 현황 등을 고려 - 유사사업 입찰 경쟁 시 복수 사업자 참여가 있는 경우 3점 이상 부여	①	②	③	④	⑤
	8	사업 수요 위험의 상당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되어 위험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? -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필요 없는 경우 : 5점 - 제도상 최소한 규모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제도가 필요한 경우: 4점	①	②	③	④	⑤
	9	본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방법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설인가?	①	②	③	④	⑤
공공성 원칙	10	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, 특수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한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? - 전혀 없는 경우 : 5 점	①	②	③	④	⑤
	11	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로 공공 부문의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등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가?	①	②	③	④	⑤
	12	본 사업은 해당 분야의 관련 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충분히 차별화된 내용을 갖고 있는가?	①	②	③	④	⑤
총 점	**60점**						

민간투자 분야 작업반

반 장　기 획 재 정 부 : 민간투자제도과장

　　한 국 개 발 연 구 원 : 박 현 민간투자지원실장

반 원

　　기 획 재 정 부 : 민자사업관리과장

　　국 토 해 양 부 : 광역도시도로과장

　　국 토 해 양 부 : 간선철도과장

　　국 토 해 양 부 : 광역도시철도과장

　　국 토 해 양 부 : 항만민자계획과장

　　교 육 과 학 기 술 부 : 교육시설지원과장

　　환 경 부 : 생활하수과장

　　국 방 부 : 민간투자팀장

　　문 화 체 육 관 광 부 : 문화정책팀장

　　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: 유웅상 민자지원팀장

　　문 화 관 광 정 책 연 구 원 : 김규원 민간투자관리팀장

　　산 업 은 행 : 이정택 수송1팀장

　　서 울 시 립 대 학 교 : 최석준 교수

　　홍 익 대 학 교 : 신성환 교수

　　한 국 조 세 연 구 원 : 김 진 전문연구위원